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6. . . (제 회)	
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(국민권익위원회 소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등의 연구자와 대학교 등의 교원 간에 유사한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에 차이가 있어 연구자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지적에 따라,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의 체계적·합리적 적용 및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확보 등을 위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대상을 조정하여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32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임직원이 받을 수 있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대학교의 교원 등과 같이 1시간(1건)당 1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.

3.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기관 협의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-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1호가목 중 “같은 호 다목에 따른”을 “같은 호 나목 중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32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임직원, 같은 호 다목에 따른”으로 한다.

별표 2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법 제2조제2호나목 중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32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임직원,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: 100만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)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[별표 2] <u>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(제25조 관련)</u> 1.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.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(<u>같은 호 다목에 따른</u>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): 40만원 나.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: 100만원 다. (생략)	[별표 2] <u>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(제25조 관련)</u> 1.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. ----- ----- (같은 호 나목 중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32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임직원, 같은 호 다목에 따른----- ----- -----): ----- 나. 법 제2조제2호나목 중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32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임직원,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: 100만원 다.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0 - 7704